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 중 선택적 동의 방식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elective Consent Method in the Collection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선종천(Jong-chun Sun)*, 김인석(In-seok Kim)**

초 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형식적 일련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방식의 정보제공 항목 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 제공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림/영상으로 대체 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흐름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현재 방식에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개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시 한 방식이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되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영 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ABSTRACT

Although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re defined through law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onsent process for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is only formal and does not guarante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roblem by information provision items of the current model, and to improve by changing the structure such as replacing the current method provided with the text with pictures and videos, and mandatory to provide the information subjects with personal information flow related images from the signing up stage. The improvement model is presented as a way to add a procedure to the current model. The effect was verified through a survey. It is hoped that the proposed model is actually reflected through the review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be a true meaning agreement that reflects the information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키워드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취급방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ivacy Policy

* First Author, Master's Course,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zoo0086@sk.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iskim11@korea.ac.kr)

Received: 2019-11-27, Review completed: 2020-02-04, Accepted: 2020-02-14

1. 서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고, 해당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동의절차는 동의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아 정보주체가 동의사실과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동의를 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재 수집방식의 문제점을 항목 별로 분석하고, 정보주체자가 알고 하는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 두 가지 형태로 개선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 선행된 관련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정의를 내리고 현재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연구 내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동의의 정의와 선택적동의의 법적 의미를 정리한다. 제4장에서 현 금융기관에서 정보주체자에게 얻어내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수집 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 5장에서 분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방식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절차를 추가 해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눠 방식을 제시한다. 나아가 설문을 통해 해당 방식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의견을 수집 해 그 효과를 검증한다.

- 설문조사
- 조사 기간: 2019년 9월
- 설문 도구: 모바일 설문 앱
- 설문 내용: 22개 문항
- 설문 대상: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한 20대 이상

- 설문 참여 인원: 136명(20대 22명, 30대 52명, 40대 45명, 50대 이상 17명)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2].

금융기관에서 다루는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이며,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5].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므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다[4].

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정의

Lee[12]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또한 Jung[8]은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 수집, 처리, 보관, 공개, 활용 등에 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및 통제를 개인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명시하지 아니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보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4].

2.3 현재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동의 강화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따른 동의 절차. 방법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등급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6]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등에 있어서의 동의 절차 상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이용자가 동의사항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
- 동의 형식에 대한 문제로 현행법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동의를 받는 방법만을 단순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있어 이용자가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 기술발전에 따라 동의절차를 구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제도와 개인정보의 이용활성화가 충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도 Jang[7]은 금융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양식개선을 제안하였으며, Kim[9]은 금융회사의 온라인을 통한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정책 수립 방식을 제시하였다.

2.4 현재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동의 완화 측면에서)

김선량[10]은 개인정보를 소유권의 객체로 보지 않으며 공유 재산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 개인정보 수집의 사전적 통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hn[1]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하나 하나를 일일이 찾아내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인 최소 수집의 원칙, 목적 명확성의 원칙, 통지 동의의 원칙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수집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태도를 데이터 이용에 초점을 두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동의와 선택적 동의의 법적의의

3.1 동의의 법적의의

‘동의’의 헌법적 근거는 동의 권 자가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다.

3.2 금융기관이 얻는 동의의 구분

금융기관이 정보주체자에게 얻는 동의는 아래와 같이 구분 된다.

-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 하는 필수적 동의
- 특화된 서비스(이벤트/행사 참여 확인, 마케팅 및 광고 등에 활용 등)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얻는데 별도 동의를 얻는 선택적 동의

3.3 선택적 동의의 법적의의

법률에서 선택적 동의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의는 일반적, 포괄적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 동의로 해석하고 있다. 해당 동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서울고등법원 판결[15] 및 대법원 판결[16]을 통해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 적법한 동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통상의 이용자라면 용이하게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하여야 한다.
-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실 및 법정 고지사항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인식 가능성을 부여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용자로 하여금 명확히 인식, 확인하게 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판단,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하여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동의의 표시는 이용자가 동의를 한다는 명확한 인식 하에 행하여질 수 있도록 그 실행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현황 및 문제점

4.1 현황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3].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가입단계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 정보와 그 밖의 선택적 정보를 구분하여 설명한 후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처리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필수적 정보
 - ① 개인식별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 ② 거래 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 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및 전자금융 거래 기록
 - ③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에 의해 조회된 개인(신용)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 정보 외에 거래신

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①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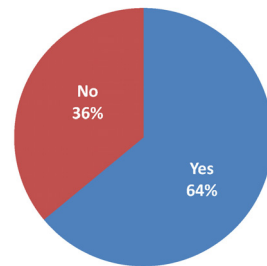
선택적으로 동의를 받는 위의 정보는 아래와 같이 사용 된다.

-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금리 혜택, 수수료 면제, 자산관리 등
- 마케팅 홍보를 위한 정보: 다른 상품에 대한 홍보 및 권유 등

4.2 문제점

정보주체자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보주체자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읽어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를 하고 있다.

Do you read the terms and conditions when signing up for financial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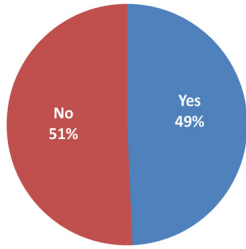


<Figure 1> Survey Result 2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13]의 동의 과정 중 처리방침 및 약관을 살펴보는 정보주체 자는 25.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으며, <Figure 1>의 금융상품 가입 시 약관을 살펴본다는 인원이 36.3%(응답자 135명 중 49명), <Figure 2>의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 진행 시 제공되는 정보를 읽어 본다는 인원이 51.1%(1~6 응답자 135명 중 68명)라는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Do you read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optional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Figure 2> Survey Result 6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침해현황[14] <Figure 3>에서 동의에 관련 된 침해가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점을 보았을 때 현재 수집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yp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user consent	1,523	3,507	2,634	3,923	2,442	2,568
Failure to notify and express obligations when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53	396	84	268	65	54

<Figure 3> Privacy Committee 2017 Personal Information Annual Report Image Page167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서식은 기관에 따라 순서가 다를 뿐 <그림 4>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제3자 제공 시 확인 할 의무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지만 서식을 살펴보면 정보주체자가 개인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항목 별로 문제점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별도 정보 없이 상호명만 기재되어 있어 정보처리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 기관에 정보가 제공 되는지를 정보주체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구체화되어있지 않아 정보주체자의 어떤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해당 항목은 <Figure 5>의 선택적 동의 시 제공되는 정보를 읽어본다는 응답자 68명 중 33.3%가 항목 중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결과를 확인하면 개선이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보인다.

Normally Format

Legal obligation
-Matters concerning collection and user purpose
Item
Period of use
Penalty for refusal

agree o disagree o

-About the offer
Recipient
purpose
Item
Detail
Period of use
Penalty for refu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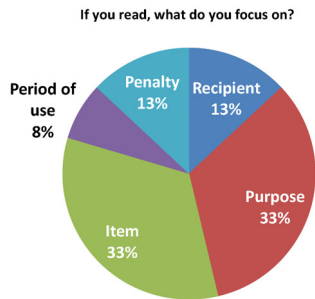
agree o disagree o

<Figure 4> Financial Institution Form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주체자가 개인정보 제공 기간을 선택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 기간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제 16조3항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거부 시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어 정보주체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Figure 5>의 선택적 동의 시 제공되는 정보를 읽어본다는 68명 중 9명(13.2%)이 불이익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결과를 통해서 해당 문구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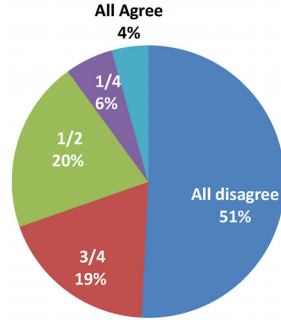
<Figure 5> Survey Result 7

5. 실질적 개선 방안

5.1 현재 방식의 구조개선 방안

현재 방식을 활용하면서 그 구조를 변경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What is the ratio of choosing to agree to an optional ma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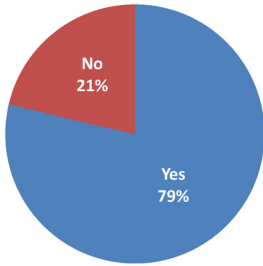


<Figure 6> Survey Result 8

- 동의여부를 기본 비 동의로 설정하도록 구조 변경: <Figure 6>의 결과를 보면 선택적 동의 사항에 무조건 비 동의를 선택한다는 응답자가 51%, 네 번 중 세 번은 비 동의를 선택한다는 응답자가 19%로 전체의 70%가 동의가 아닌 비 동의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절반을 넘는 수치로 동의절차 시 기본적으로 비 동의가 선택되어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주체가 개인정보 제공 기간을 선택할 있도록 절차 변경: 현재 방식의 일방적인 제공 기간 명시가 아닌 정보주체자가 직접 그 기간을 선택 하게 함으로써 그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처리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그림 동영상상을 통한 개인정보 흐름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동의서 강화방안은 쉬운 용어 사용하기, 주용 내용 색, 크기로 구분하기 등의 글로 제공 되는 방식에 대한 강화에 국한되어 있다. 이와 다르게 선택을 함으로써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까지

제공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그림/동영상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정보주체 자에게 제공된다면 정보주체자의 의사판단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처리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수집 이용에 대해 명확히 표기했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

Would it make more sense if my personal information flow was provided in pictures and videos?



<Figure 7> Survey Result 11, 16

<Figure 7>을 분석하면 현재 글로 제공되는 정보가 그림/영상으로 대체된다면 더 이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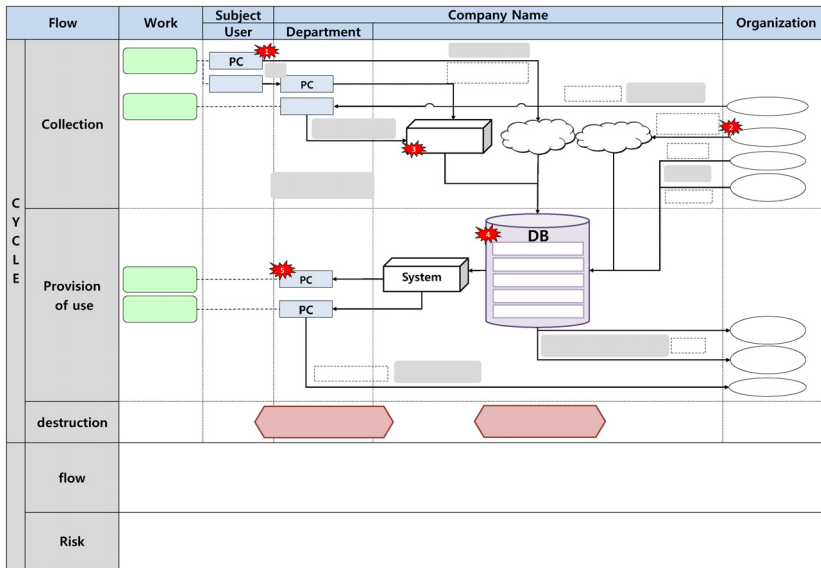
잘 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78.8%(응답자 135명 중 104명)로 이 수치가 해당 방식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럼으로 정보를 제공 할 시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 시(획득현황 <Figure 8>) 준비하는 항목인 <Figure 9>와 같은 개인정보흐름도에 기반 해 제작 되어 제공된다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Certificate Issuance Statistics

Bank	15
Financila investment insurance	18
Financial institutions	6
Small and medium sized people	3
Electronic banking	9
etc	18
totla	7
	76

<Figure 8> Financial Security Agency Certificate Issuance Statistics (2019. 07. 19)



<Figure 9> Personal Information Flow Ch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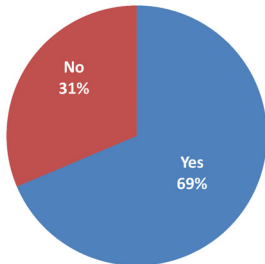
흐름도 제공 시에는 아래 사항이 반영 되어 정보주체자가 그 흐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주기 별 개인정보 이동 흐름 명시
- 흐름의 제공자와 제공 받는 자 명확히 구분
- 각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단 기재
- 온/오프라인을 실선, 점선으로 구분
- 흐름 판단에 필요한 정보 간략히 명시

5.2 추가 방안 제시

절차를 추가 하며 현재방식의 문제점을 개선 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다.

Are you interested in seeing how your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when you sign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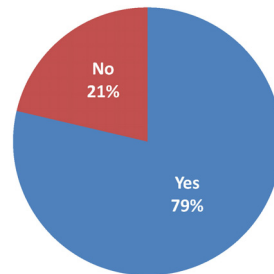


<Figure 10> Survey Result 18

- 최초 가입 시 개인정보 관련 영상 제공: 금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자에게 개인정보흐름 관련 동영상 제공하게 한다면, 정보주체자가 알고 하는 동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Figure 10>에서 영상이 주어진다면 영상을 볼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67.9%(응답자135명 중 91명)이며, <Figure 11>에서 영상을 보겠다는 응답자 중 78%(응답

자91명 중 71명)가 영상제공 의무화에도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다는 결과와 정보주체자가 사전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 확인하게 되면 스스로 행동을 개선하게 된다는 관련 연구 결과[11]를 통해 개인정보영상제공이 실효성이 있음을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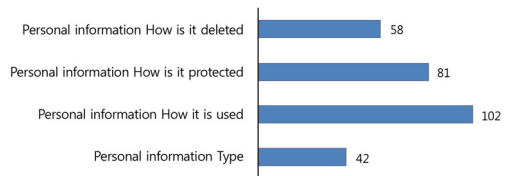
Would it make more sense if my personal information flow was provided in pictures and videos?



<Figure 11> Survey Result 20

제공되는 영상에는 <Figure 12>의 내용이 반영되어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the vid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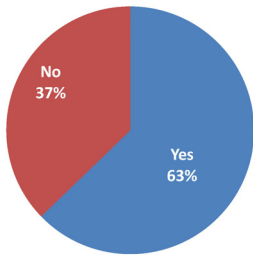


<Figure 12> Survey Result 21

- 혜택 강조: 개인정보 선택 제공 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강조 해 명시 한다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진정한 의

미의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Figure 13>에서 개인정보 제공 시 혜택이 주어진다면 동의할 의향이 높아진다는 63%(응답자 132명 중 84명)의 결과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다.

Will you be more inclined to agree if you are provided with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cash back?



<Figure 13> Survey Result 12, 17

6. 결 론

본 연구에서 기존의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과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설문 결과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제시한 개선 방식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적용 되었을 때 추가로 그 효과가 검증 되어야겠다.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가 매겨지고 이루어지는 현 시장 상황에서 현재 선택적 동의 방식은 정보주체 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명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선택 본연의 의미에 위배되고 있다. 상기에 제시한 개선 방식이 추가

로 검토 되어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지켜지는 동의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References

- [1] Ahn, H., “A Study on the Legislative Method for Promot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Big data Environments,” Korea University, 2019.
- [2] Article No.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ttps://www.law.go.kr>.
- [3] Article No.15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ttps://www.law.go.kr>
- [4] Constitutional Court 2005. 5. 26 Sentence 99 Constitution 513, law reports 17-1, pp 683.
- [5] Financial Privacy Guidelines p. 7, 2016.12 <https://www.privacy.go.kr/inf/gdl/selectBoardList.do>.
- [6] Inha University University-Industry Foundatio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sent proceduremethod according to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on the introduction of management grading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unications Commission
- [7] Jang, G. H., “An improved Model of Effectiveness on the Implemen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Agreement in Financial Compani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Vol.26, No.1, 2016.

- [8] Jung, J. H., "An introduction to constitutional law," Parkyoungsa, pp. 396-397, 2017.
- [9] Kim, S. H., "A study on Decision Making Model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Policy Establishment through Internet Homepage of Financial Compani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Vol.27, No.3, 2017.
- [10] Kim, S., "The Collecting of Minimum Personal Information Necessary & Freedom of Contract," Kangwon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No.52 pp. 125-161, 2017
- [11] Lee, E. S., Lee, Z. K., and Cha, K. J., "The Experimental Research of Protection Behavior Dependson Privacy Concern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 Privacy Policy for KakaoTalk Users,"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21, No.2, pp. 135-150, May 2016.
- [12] Lee, S. M., "Th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p. 227, 2008.
- [13]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2019
- [14] Personal Information Annual Report Privacy Committee, 2017.
- [15] Seoul High Court 2014.1.9 Sentence 2013N U,14476judgemen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14240>.
- [16] Supreme Court 2016.6.28 Sentence 2014N U 2638, judgement.<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08353>.

저 자 소 개



선종천

2013년

2013년~현재

2017년~현재

관심분야

(E-mail: zoo0086@sk.com)

홍익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에스케이인포섹 근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

정보보호, 금융보안, 전자금융법규



김인석

1973년

2003년

2008년

2009년~현재

관심분야

(E-mail: iskim11@korea.ac.kr)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학사)

동국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졸업 (석사)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과 졸업 (박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자금융보안, IT감사, 전자금융법규